

<p>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<u>당일에</u>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당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 25 조(수익증권의 환매제한)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<u>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 <u>---부터 제 2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)에-----.</u> ②----- ----- <u>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2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)에-----.</u>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5 조(수익증권의 환매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 일정한 날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)-----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부 칙></u></p> <p><u>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7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 등의 폐지) 제 20 조 및 제 22 조 규정의 개정으로 2005 년 6 월 7 일 개정된 부칙 제 2 조 및 제 3 조는 삭제한다.</u></p>
--	---

ㄴ. 수익증권 환매시 MMF거래 당일결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항 내용 추
가 (아래내용 참조)

<p>※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일에 환매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 (단, 관련 법령 및 판매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)</p> <p>① 주식 등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이 예약된 경우</p> <p>② 유희자금을 MMF에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계좌의 경우</p> <p>③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63 조제 2 항, 범시행령 제 60 조제 2 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MMF 를 매입하는 경우 등</p>
